제65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6. 2. 13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6. 2. 13. (금)

○ 출석위원(5명)

- 오균 행정사회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이민창, 이인호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2026-19	개인정보위	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	심의안건

Ⅲ. 회의 결과

○ (심의) **「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**(개인정보위, 2026-19호)

소관 부처	개인정보보호위원회
규제사무명	**보건의료분야의 정보전송자 범위**(안 제2조, 별표)
논의내용	○ **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** 정책은 시행 후 **약 1년의 기간**이 경과하였는데, - **상급종합병원**은 **정보전송체계 구축**으로 의료진이 **환자의 투약정보** 등을 **즉시 확인**할 수 있어 진료의 **정확성·편의성**이 **제고**되었다는 입장이며, - **환자단체**는 **진료기록사본** 등을 **전자적 방식**으로 타 의료기관에 **간편**하게 **전송**할 수 있고, **특수전문기관**으로부터 **맞춤형 의료·건강서비스**도 제공받을 수 있어 **만족도가 증가**했다는 의견으로, - **상급종합병원**을 대상으로 한 **정보전송체계의 효과**가 **일정 부분 나타났다**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○ 또한, **정보전송 시스템**(건강정보 고속도로) **구축**에 **비용**이 수반됨에도 불구, **종합병원 115개소**가 이미 마이데이터에 **자발적으로 참여**한 것은 -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 내 타 종합병원과의 **의료정보 연계**를 통한 **진료 용이화, 방문 환자 수 증가** 등의 **편익**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, - 현재 **시스템**을 **구축하지 않은 222개소**의 경우도 **기술적·재정적 지원** 및 **점진적인 도입**을 요청하는 수준임

논의내용	- **개보위**는 **안 별표 단서**를 통해, **전송시스템을 구축한 종합병원에 한해** 정보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**자발적 참여와 유사**하게 운영할 계획으로, **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음** ○ 다만, **▲시스템 구축여부**가 **자체판단** 사안인지 **▲미구축** 시 **법적제재**가 있는지 **명확화**해달라는 이해관계자의 **요구**가 있는 상황인바, - **별표 단서 조문**을 **보완**하여 개보위 **규제 방침**을 보다 **명시적으로 규정**하고, 피규제자의 **혼란**을 **방지**할 필요가 있으며, - 피규제자의 **규제부담**을 감안, **향후 전송시스템을 구축**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**재정적·기술적 지원**이 **병행 검토**될 필요
위원회 결정 내용	○ **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** 정책의 **실효성 확보** 차원에서 **보건의료정보전송자 범위**에 **종합병원**을 **추가**할 **필요성이 인정**되고, - 피규제자의 **자발적인 선택**에 기반하여 **점진적**으로 **규제 대상을 확대**하고 있어, **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** - 다만, 피규제자의 **해석상 오인 방지**를 위해, 전송시스템이 **구축되지 않은 종합병원**의 경우 동 **규제의 적용**이 **배제**됨을 **명확히 규정**(안 별표)할 것을 개선권고 ○ 또한,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을 감안, 향후 **전송시스템을 구축**할 종합병원 대상 **재정적·기술적 지원방안**을 **검토**할 것을 부대권고